

환경 소송과 국제투자중재 - 웨브론 사건을 중심으로*

Case Study o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and Environmental Litigations with Specific Reference to Chevron/Ecuador Litigation

강병근**
Pyoung-Keun Kang

〈목 차〉

- I. 서 론
- II. 웨브론 사건 환경 분쟁의 경과 개요
- III. 석유개발계약 관련 투자중재 사건
- IV. 환경침해소송 관련 투자중재 사건
- V.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투자자-국가 중재, 정의의 거부, 관할권 항변, 환경소송, 공익적 청구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4969)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론

국제법에서 국내법은 사실 문제로서 취급된다.¹⁾ 국제법으로서 규범력이 없기 때문이다. 웨브론(Chevron/Ecuador) 사건은 20년 이상에 걸쳐서 미국과 에콰도르 법원의 소송절차 및 판결과 결부되어서 전개되고 있는데 매우 다양한 국내, 국제 소송을 아우른다.²⁾ 국제 투자중재 방식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웨브론 사건에서는 에콰도르 국내법의 적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매우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³⁾ 국제투자중재 방식의 웨브론 사건(이하 웨브론 투자중재사건)의 핵심은 1995년 화해계약(1995 Settlement Agreement)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것이고, 이와 함께 에콰도르의 헌법 규정 그리고 민법 규정이 문제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1999년에 제정된 환경관리법(Environmental Management Act 1999)의 법적 효과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중재피신청인인 에콰도르는 웨브론 투자중재 판정부의 중재관할권을 전면 부인하면서, 중재신청인인 웨브론과 텍스펫(Texpet)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관계의 진위나 법적 논리 면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양상이다.

웨브론 사건에서 중재당사자들의 법적 그리고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들이 서로 상충되기에 중재판정부는 절차를 세분화해서 관할권과 본안 사항을 나누어서 판단한 바 있고⁴⁾, 본안 사항에 대해서는 중재신청인 중 하나인 웨브론이 1995년 화해계약에서 서명하지 않았

- 1) “국제법과 국제법 기관인 재판소의 관점에서 보면, 국내법은 사실에 불과한 것으로서 국가의 의지를 표현하고 그 행위를 구성하는데, 그 방식은 법적 결정이나 행정처분이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다(From the standpoint of International Law and of the Court which is its organ, municipal laws are merely facts which express the will and constitute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same manner as do legal decisions or administrative measures).” Serbian and Brazilian Loans Case (1929) PCIJ, Ser A Nos 20-1 pp. 18-20; Nottebohm Case, [1955] ICJ Reps 4 pp. 20-1.
- 2) Chiara Giorgetti, “Mass Tort Claim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Proceedings : What Are the Lessons from the Ecuador-Chevron Dispute”, 34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3, pp. 787-791; 미국과 에콰도르에서 진행된 Aguinda 사건 및 Lago Agrio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Judith Kimerling, “Indigenous Peoples and the Oil Frontier in Amazonia : The Case of Ecuador, ChevronTexaco, and Aguinda v. Texaco”, 38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Politics (2006), pp. 47-484.
- 3) Chevron/Ecuador 사건에서 미국 연방 지방법원은 ‘불편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 원칙을 근거로 1996년 에콰도르 원주민들의 집단소송을 기각하였다. Aguinda v. Texaco, Inc., 945 F. Supp. 625, 628 (S.D.N.Y. 1996). 이후 1999년 에콰도르가 환경관리법(Environmental Management Act : EMA)을 제정하여 시행하자 에콰도르 원주민들은 에콰도르 라고아그리오(Lago Agrio)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미국 내에서 ‘불편한 법정지’ 관련 소송이 계속되어서 2002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불편한 법정지 원칙에 근거한 판결을 확정지었다. Aguinda v. Texaco, Inc., 303 F.3d 470, 473 (2d Cir. 2002). ‘불편한 법정지’ 원칙에 근거한 Texaco 측의 관할권 항변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Howard M. Erichson, “The Chevron-Ecuador Dispute, Forum Non Conveniens, and the Problem of Ex Ante Inadequacy”, 1 Stanford Journal of Complex Litigation (2013), pp. 418-419.
- 4) Third Interim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on, Chevron/TexPet v. Ecuador, UNCITRAL, PCA Case No. 2009-23 (Feb. 27, 2012), <<http://www.italaw.com/sites/default/files/case-documents/ita0175.pdf>> (이하 관할권 판정)

지만 당사자 지위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서,⁵⁾ 에콰도르 법원에 제기된 환경침해소송과 미국 법원에서 제기된 환경침해소송에서 문제된 원고의 청구권이 갖는 법적 성격과 양 침해소송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것을 나누어서 판단하였다.⁶⁾ 중재판정부는 절차명령 제23호에서 나머지 본안 사항에 관한 판단은 ‘Track 2’에서 그리고 손해배상금이나 법률비용에 관한 사항들은 ‘Track 3’에서 다루기로 하였다.⁷⁾

II. 웨브론 사건 환경 분쟁의 경과 개요

1964년에 미국회사인 텍사코(Texaco)는 에콰도르 현지 자회사인 텍스펫을 통하여 에콰도르 북동부 열대우림 지역에서 석유탐사와 채굴사업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콘소시움에 참여하였다. 1973년, 에콰도르, 텍스펫, 그리고 에콰도르 걸프 석유회사(Ecuadorian Gulf Oil Company : Gulf)사이에 1992년 6월 6일 만기 예정인 양허계약(이하, 1973년 양허계약)이 체결되었다. 1973년 양허계약에서는 에콰도르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에콰도르(PetroEcuador)가 걸프사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게 하였다. 1973년 양허계약 이행 기간 중에 에콰도르의 콘소시움 사업장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세어 나오면서 주변 환경이 매우 나빠졌다. 1990년, 텍스펫과 에콰도르가 합의하여 시행한 환경감사에서 환경복원이 필요한 일부 지역이 파악되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화 800만 달러에서 미화 1300만 달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992년에 1973년 양허계약이 종료된 후 텍스펫은 자신의 콘소시움 지분 일체를 페트로에콰도르에 양도하였다. 1995년 5월 4일, 에콰도르, 페트로에콰도르, 그리고 텍스펫이 화해계약(이하, 1995년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화해계약에 따라서 텍스펫은 콘소시움 사업지에서 환경복원 사업을 수행하고, 에콰도르 내 일부 지역 공동체의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차원의 배상하기로 하였다. 에콰도르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텍스펫은 1996년에 오리엔테(Oriente) 지역 내 자치단체 4곳 그리고 수쿰비오스(Sucumbios)주, 나포(Napo) 지자체 협의체와 계약(이하, 지자체 및 주 면책계약)으로써 환경관련 분쟁을 화해 타결하였다. 1995년 화해계약과 지자체 및 주 면책계약에 따라서, 텍스펫은 에콰도르 국내에서 환경복원과 공동체 개발에 미화 4000만 달러를 지출하였다.

1998년 9월 30일, 에콰도르, 페트로에콰도르, 텍스펫은 최종면책계약(이하, 1998년 최종면책계약)을 체결하였고, 여기에서 텍스펫은 1995년 화해계약에 따라서 모든 의무를 이행

5) First Partial Award on Track 1, Chevron/TexPet v. Ecuador, UNCITRAL, PCA Case No. 2009-23 (17 September 2013), <<http://www.italaw.com/sites/default/files/case-documents/italaw1585.pdf>> (이하 제1본안 일부 판정)

6) Decision on Track 1B, Chevron/TexPet v. Ecuador, UNCITRAL, PCA Case No. 2009-23 (12 March 2015), <<http://www.italaw.com/sites/default/files/case-documents/ita0175.pdf>> (이하 제1B본안 결정)

7) 2014년 2월 10일자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 제23호(Procedural Order No. 23) 에 대해서는 다음 중재판정부의 결정 참조. 제1B본안 결정, para. 22.

했다는 점을 입증 받았고, 이로써 콘소시움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 책임에서 면제되었다.

한편, 1993년, 오리엔테 지역 소재 석유 사업장 내 또는 그 근처에서 생활하는 인디언들과 농부 3만여 명을 대표하여, 텍사코를 상대로 한 소송(이하 *Aguinda* 소송)이 뉴욕 주 소재 연방법원에 제기되었다.⁸⁾ *Aguinda* 소송을 기획하고 유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미국 변호사인 Steven Donziger 였고, 소송자금은 미국 내 유수의 법률회사와 투자자문사 및 헤지펀드 투자자로부터 조달하였다. 이들 회사들은 장차 미화 수백억 달러의 판결금이나 화해금이 결정되면 그 중에서 일정 비율로 수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⁹⁾ 이 소송의 피고인 텍사코는 수소법원에 불편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를 이유로 *Aguinda* 청구의 기각 결정을 신청하였다.¹⁰⁾ 당시 에콰도르 정부는 텍사코의 신청을 지지하는 쪽이었다.

1999년 7월, 에콰도르는 환경관리법(1999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 1999 EMA)을 제정하였다. 1999 EMA 제41조에 따르면, 집단 환경권(*collective environmental rights*)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반인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서는 공유 이익이 있고, 침해적 작위 혹은 부작위로 직접 피해를 당한 개인이 건강악화 혹은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2000년, *Aguinda* 소송의 수소법원인 미국 법원은 텍사코가 에콰도르 법원의 재판권에 동의한다는 조건하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2001년에 웨브론은 텍사코를 인수하였다. 2003년, *Aguinda* 소송의 원고와 동일하지 않지만 중첩되는 에콰도르인 원고 48명이 *Aguinda*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인 변호사들의 지원 하에 라고 아그리오(*Lago Agrio*) 지역 법원에서 텍사코를 상대로 소송(이하 *Lago Agrio* 소송)을 청구하였다.

이 소송의 원고(*Lago Agrio Plaintiffs : LAPs*)는 텍스팻의 석유 사업지에 대해서 손해배상과 환경복원조치를 구하였다. 라고 아그리오 소장에서는 웨브론이 2001년 텍사코와 합병한 후 텍사코의 권리와 의무를 대체하였기에 LAPs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웨브론을 피고로 적시하였다. 이 소송에서 에콰도르 법원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웨브론이 에콰도르 북동부 지역 소재 열대우림지역의 석유 오염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지의 여부였다. 2011년 2월, 라고 아그리오 법원은 웨브론이 미화 86억 4천 600만 달러를 LAPs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고, 15일 이내에 웨브론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8) *Aguinda v. Texaco, Inc.*, No. 93 Civ. 7527 (JSR) (S.D.N.Y. Nov. 3, 1993); *Republic of Ecuador v. ChevronTexaco Corp.*, 376 F. Supp. 2d 334, 341 (S.D.N.Y. 2005).

9) 분쟁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국제투자중재의 경우에도 빈번한데 현재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쟁점이 소개되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안건형/김성룡/조인호, “국제투자중재에서 제3자 자금조달 제도의 주요 법적 쟁점”, 중재연구, 제23권 제2호, 2013.6, p. 62.

10) 미국법원칙에서 불편한 법정지 원칙에 근거하여 미국 연방 지방법원은 외국 소재 법원이 재판하기에 더 적합한 경우 자신이 맡은 사건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Sinochem Int'l Co. v. Malay. Int'l Shipping Corp.*, 549 U.S. 422, 425 (2007)

않을 경우 징벌적 차원에서 86억 4천 600만 달러를 추가로 납입하도록 판결했다.¹¹⁾ 웨브론은 항소심 법원에 대해서 하급심 판결이 편취되었다고 항소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에콰도르 대법원(National Court of Justice)은 웨브론의 상고주장에 대해서 항소심 판결을 인용하였지만, 1심법원이 판결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여서 LAPs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금은 미화 86억 4천600만 달러로 확정되었다.¹²⁾

웨브론은 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텍사코가 에콰도르, 페트로에콰도르와 체결한 1995년 화해계약에 따라서 부담한 석유 사업지 정화작업에 미화 4000만 달러를 지급했던 점, 페트로에콰도르가 1992년 텍사코 퇴거 후 열대우림 지역 내 석유 사업장을 인수했기에 해당 열대우림지역에 오염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페트로에콰도르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는 점, 그리고 에콰도르 사법부와 LAPs를 대리하는 미국인 변호사들이 광범위하게 사기, 뇌물공여, 협박, 강탈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Ⅲ. 석유개발계약 관련 투자중재 사건

웨브론과 텍사코는 공동 중재신청인으로서 에콰도르를 상대로 해서 2006년 미국-에콰도르 투자보장조약(US-Ecuador BIT : BIT)에 따른 중재(첫 번째 웨브론 중재)를 신청하였다. 첫 번째 웨브론 중재사건에서 신청인들은 에콰도르가 BIT 제2조 제7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³⁾ 신청인들은 텍스펫이 1991년에서 1993년 사이에 제기한 7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에콰도르 법원이 판결을 과도하게 지체한 결과 정의의 거부(denial of justice)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⁴⁾ 2011년 이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미화 96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라는 취지로 신청인에 유리한 중재판정을 내렸다.¹⁵⁾ 중재판정부는 관습국제법에 따른 정의의 거부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고, BIT 제2조 제7항에 따라서 효과적 수단이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11) 라고 아그리오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웨브론측이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에서 제기한 판결에서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Chevron Corp. v. Donziger*, Case 1:11-cv-00691-LAK-JCF (March 15, 2013), pp. 179-292. (이하 *Chevron/Donziger* 사건)

12) *Chevron/Donziger* 사건, p. 292.

13) 미국-에콰도르 BIT 제2조 제7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Each Party shall provide effective means of asserting claims and enforcing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investment agreements, and investment authorizations." Interim Award, *Chevron/TexPet v. Ecuador*, UNCITRAL, PCA Case No. 34877(1 Dec 2008), para. 116. <<http://www.italaw.com/sites/default/files/case-documents/ita0150.pdf>>

14) 첫 번째 웨브론 중재 사건의 신청인들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7건의 총 소송가액은 미화 5억 5300만 달러 이상이고, 2006년 12월 중재 신청 시까지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기간은 15년에 달했다. Partial Award on the Merits, *Chevron/TexPet v. Ecuador*, UNCITRAL, PCA Case No. 34877(30 March 2010), para. 33. <<http://www.italaw.com/sites/default/files/case-documents/ita0151.pdf>>

15) Final Award, *Chevron/TexPet v. Ecuador*, UNCITRAL, PCA Case No. 34877 (31 August 2011), para. 350. <<http://www.italaw.com/sites/default/files/case-documents/ita0154.pdf>>

판단하였다.¹⁶⁾ 표면상 첫 번째 쉘브론 사건의 중재판정에서는 관습국제법에 근거한 정의의 거부 기준이 BIT 제2조 제7항에 따른 기준보다 더 까다로운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의견은 명확하지 않다.¹⁷⁾

에콰도르는 자신에게 불리한 중재판정에 대해서 중재지 관할 법원인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청구하였다.¹⁸⁾ 중재판정취소소송에서 에콰도르는 첫 번째 쉘브론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관할권 없이 중재판정을 내린 점, 설령 관할권이 있다고 해도 관할권 행사 범위를 유일한 점, 그리고 해당 중재판정의 이유가 부적절한 점을 근거로 해당 중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였다.¹⁹⁾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은 2012년 5월 2일 에콰도르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BIT 제6조에서 ‘투자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중재판정부는 중재 관할권을 가졌다는 점, BIT 제12조 제1항에서 적용 대상이 되는 투자는 BIT 발효 당시 또는 발효 후 행해졌거나 취득된 투자에 대해서 BIT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 규정에 비추어서 제6조 규정을 해석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중재판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시하였다. 해당 법원은 에콰도르가 제기한 중재판정의 이유에 대한 주장도 배척하였다. 일심법원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인용되었고, 네덜란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²⁰⁾

쉘브론은 1958년 뉴욕협약을 근거로 에콰도르를 상대로 미국 내에서 중재판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중재판정 확인절차를 개시하였다.²¹⁾ 이 절차에서 에콰도르는 해당 중재판정이 집행될 경우 외국의 주권 및 법원에 계속 중인 사법절차의 자율성 존중에 관한 공공질서를 위반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였다. 수소법원은 뉴욕협약에서 정한 수단을 활용하여 중재판정을 집행하는 것은 외국 중재판정에 우호적인 미국의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쉘브론의 중재판정 확인 신청을 인용하였다.²²⁾

16) 2011년 확정판정에서는 2008년 12월 1일자 중간판정(Interim Award)에서 내려진 결정사항만 인용하였다. Final Award, para. 173.

17) 에콰도르는 BIT 제2조 제7항의 기준이 관습국제법상 정의의 거부 기준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Final Award, para. 65.

18)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 참조. Judgment of the District Court of the Hague (2 May 2012) <<http://www.italaw.com/sites/default/files/case-documents/ita0923.pdf>>

19) 이 중재사건은 1976년 UNCITRAL 중재규칙(Arbitration Rules)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법적 중재지가 네덜란드 헤이그이기에 네덜란드 민사소송법과 네덜란드 중재법에 따라서 관할법원을 헤이그 지방법원으로 해서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가능하였다.

20) 네덜란드 대법원 언론보도문, “Substantial compensation award against Ecuador upheld”, 2014년 9월 26일. <<https://www.rechtspraak.nl/Organisatie/Hoge-Raad/Nieuws/Pages/Substantial-compensation-award-against-Ecuador-upheld.aspx>>

21) 미국과 에콰도르는 모두 1958년 뉴욕협약(1958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의 당사국이다.

22) Chevron Corp. v. Republic of Ecuador, Civil Action No. 12-cv-01247-JEB, 2013 WL 2449172 (D.D.C. 2013), p. 17.

IV. 환경침해 소송 관련 투자중재 사건

1. 도입

쉐브론과 텍스펫은 2009년 9월 23일자로 된 중재통지서(notice of arbitration)를 제출하여 미국-에콰도르 BIT를 근거로 에콰도르를 상대로 두 번째 투자중재를 개시하였다. 중재통지서에서 신청인들은 에콰도르 사법부와 행정부의 작위 및 부작위로 인해서 에콰도르가 신청인들에게 부담하는 BIT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방법으로써 에콰도르가 라고 아그리오 소송에 따른 판결금에 대해서 배상하도록 하는 명령을 구하였다.²³⁾ 이러한 구제방법이 내려질 경우 쉐브론은 라고 아그리오 소송에서 에콰도르 내 텍스펫의 석유 사업지에서 발생한 환경 등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쉐브론이 LAPs에게 지불해야 할 판결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두 번째 쉐브론 투자중재에서 신청인들은 애초에는 주로 BIT 제2조 제7항을 근거로 하였지만²⁴⁾, 2011년 2월 11일 쉐브론에 대해서 미화 182억여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신청인들은 청구원인을 수정하여 관습국제법에 따른 정의의 거부에 관한 주장도 포함시켰다.²⁵⁾ 신청인들은 원고 측 변호사들과 라고 아그리오 법원이 합작해서 라고 아그리오 판결문을 작성한 점, 에콰도르 정부 공무원이 원고 측 변호사들과 협력해서 사전에 쉐브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기로 한 점, 사기, 증거 위조 및 조작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무시한 채 라고 아그리오 판결이 내려진 점을 주장하였다.²⁶⁾ 더 나아가서, 신청인들은 원고 측 변호사들과 에콰도르가 페트로에콰도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도 체결했다고 주장하였다.²⁷⁾

23) Claimants' Notice of Arbitration, *Chevron/TexPet v. Ecuador*, UNCITRAL, PCA Case No. 2009-23 (23 Sep 2009), para. 76. <http://www.italaw.com/sites/default/files/case-documents/ita0155_0.pdf>

24) Claimants' Memorial on the Merits, *Chevron/TexPet v. Ecuador*, UNCITRAL, PCA Case No. 2009-23 (6 Sep 2010), para. 457. <<http://www.italaw.com/sites/default/files/case-documents/ita0164.pdf>>

25) Claimants' Supplemental Memorial on the Merits, *Chevron/TexPet v. Ecuador*, UNCITRAL, PCA Case No. 2009-23 (20 Mar 2012), paras 180-254. <<http://www.italaw.com/sites/default/files/case-documents/ita0177.pdf>>; 정의의 거부 주장은 국제적 최소기준대우의 내용으로서 공정공평대우의 법리와 연결된다. 김경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의 대상이 된 투자자 보호원칙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1호, 2009.3, pp. 134-136; 김용일/홍성규, “국제투자협정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2권 제3호, 2012.12, pp. 204-205.

26) *Ibid.*, para 252.

27) *Ibid.*, para 189.

2. 관할권 및 수리 적격성 판단

에콰도르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면서 텍스펫이 했던 투자는 1992년에 종료되었기에 1997년에 발효한 미국-에콰도르 BIT 제6조 제1항 (a) 혹은 (c)에 따른 중재에 회부될 분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웨브론이 1995년 화해계약과 1998년 최종면책계약(이하 통합적으로 ‘화해계약’이라 함)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이들 계약을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²⁸⁾ 에콰도르는 또한 비록 중재판정부가 투자분쟁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중재신청인들의 청구사항을 판단할 경우 중재의 제3자인 LAPs의 권리를 판단할 수 있기에 관할권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⁹⁾ 에콰도르는 중재판정부의 일응(*prima facie*)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BIT 각 규정에 대해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있다는 점을 신청인들이 입증할 책임이 있고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관할권의 근거를 객관적인 면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⁰⁾

신청인들은 에콰도르가 자국 법원에 대해서는 텍스펫의 석유 사업지와 관련하여 웨브론에 대해서 판단할 재판권이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중재에서는 텍스펫의 사업지로부터 웨브론을 제외함으로써 웨브론에 대한 중재관할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³¹⁾ 신청인들은 특히 화해계약에 근거하는 권리와 청구는 텍스펫이 1973년 양허계약에 따라서 수행했던 석유 탐사 및 생산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 그리고 화해계약에 따른 신청인의 권리와 청구사항이 에콰도르에서 행한 투자의 일부를 구성하기에 신청인의 투자와 결합된다고 주장하였다.³²⁾ 신청인과 에콰도르 사이의 분쟁을 판단할 경우 LAPs가 갖는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신청인은 LAPs가 페트로에콰도르와 에콰도르 정부를 상대로 제소했어야 하기에 상대방을 잘못 선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³³⁾

중재판정부가 적용해야 할 일응 기준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인 에콰도르의 주장은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의 본안 사항을 다루고 있기에 중재관할권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³⁴⁾ 중재판정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고 피신청인이 부정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응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³⁵⁾ 라틴어에서 유래하는 ‘일응(*prima facie*)’ 용어의 의미상, 중재관할권 판단 단계에

28) Memorial on Jurisdictional Objections of The Republic of Ecuador, Chevron/TexPet v. Ecuador, UNCITRAL, PCA Case No. 2009-23 (26 July 2010), paras 45-112. <<http://www.italaw.com/sites/default/files/case-documents/ita0161.pdf>>

29) Ibid., para. 168.

30) 관할권 판정(주4), para. 4.77.

31) Claimants' Counter-Memorial on Jurisdiction, Chevron/TexPet v. Ecuador, UNCITRAL, PCA Case No. 2009-23 (6 Sep 2010), para. 9. <<http://www.italaw.com/sites/default/files/case-documents/ita0163.pdf>>

32) 첫 번째 웨브론 투자중재의 중재판정부는 “양허계약은 투자의 근거가 되는 계약으로서 ‘투자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Interim Award(주12), para. 211.

33) Claimants' Counter-Memorial on Jurisdiction(주30), paras. 239-240.

34) 관할권 판정(주4), para. 3.96.

35) Ibid., para. 4.5.

서는 본안 사항을 예비적으로 심리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신청인의 경우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항이 본안 심리에서 충분히 다루어볼 정도로 중요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³⁶⁾ 판정부는 관할권 판단 단계에서는 신청인의 청구사항의 본안 혹은 피신청인이 활용가능한 방어수단의 당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법적 혹은 사실적 쟁점 사항으로서, 예컨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서 청구한 사항과 관련된 BIT의 근거와 같은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³⁷⁾ 판정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최소한 ‘다투어볼 정도의 심각성’을 갖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은 피신청인이 BIT 제6조 제1항 (a)에 따른 관할권 행사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사항과 웨브론이 화해계약과 관련해서 청구한 사항의 본안에 관한 문제와 결합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면서, 피신청인이 제기한 관할권 항변에 관한 사항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 중재규칙 제21조 제4항에 따라서 본안 판단시 함께 다루기로 결정하였다.³⁸⁾

3. 본안 심리 절차

중재판정부는 2012년 4월 9일자 절차명령(Procedural Order) 제10호에서 당사자들의 분쟁의 본안사항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 ‘제1 본안절차(Track I)’ 그리고 ‘제2 본안절차(Track II)’로 불렀다. 제1 본안절차에서는 화해계약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위주로 하면서 화해계약의 해석과 법적 효력으로서 예컨대 웨브론이 화해계약에 따라서 ‘책임면제자(Releasee)’인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에 한정하여 다루기로 하였다.³⁹⁾

(1) 제1 본안절차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은 2000년 10월 15일 그리고 2001년 11월 1일 웨브론과 텍사코의 합병으로 웨브론이 텍스펫의 간접 소유자, 지배자, 최종 부모회사가 됨으로써 1995년 화해계약 제5조 제1항의 책임면제자 유형에 해당하는 ‘*principales*’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⁴⁰⁾ 웨브론은 제5조 제1항의 ‘*principales*’ 용어는 에콰도르 법에 따라서 웨브론 자신과 같은 장래의 부모 회사를 책임면제자로 포함시키겠다는 객관적인 의도를 표명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이 주장

36) Ibid., para. 4.7.

37) Ibid., para. 4.11.

38) Ibid., para. 4.53; 1976년 UNCITRAL 중재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In general,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rule on a plea concerning its jurisdiction as a preliminary question. However, the arbitral tribunal may proceed with the arbitration and rule on such a plea in their final award.”

39) 제1본안 일부판정(주5), paras 2-3.

40) Ibid., para 37.

하듯이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임면제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⁴¹⁾

신청인들은 1995년 화해계약 제5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구원인에 따라서 웨브론이 면제되는 책임 범위는 피신청인이 공동체를 대표해서 일반적인 공익에서 행사할 수 있기에 1995년 화해계약에 따라서 화해타결하고 책임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 집단적 혹은 공익적 성격의 환경권 일체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집단적 혹은 공익적 성격의 환경권에 기반을 둔 청구원인은 사인이 환경오염으로 받은 개인적 손해에 기반을 둔 청구원인과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⁴²⁾ 웨브론은 1995년 화해계약이 체결되었던 당시에 에콰도르 법상 집단적이고 공익적인 권리가 존재했지만 개인적 손해에 대한 청구사항이 없는 경우 사인은 그러한 집단적이거나 공익적인 권리에 대해서 환경복원 혹은 손해배상과 같은 환경권에 근거한 청구를 할 소송당사자 적격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⁴³⁾

신청인들은 Lago Agrio 소송은 이전 뉴욕에서 진행된 Aguinda 소송과 달리 불특정 개인을 위하여 집단적 혹은 공익적 권리를 위한 환경권에 근거한 청구를 하는 것인데, 이는 1995년 화해계약에서 면제되었던 것이기에 이러한 사항을 청구원인으로 제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신청인들은 이들 청구는 개인의 손해를 이유로 사인들이 제기한 것이 아닌 점에서 뉴욕의 Aguinda 소송에서 특정 개인들이 개인적 손해에 대해서 개인적 권리에 대해서만 청구를 제기한 경우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⁴⁴⁾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웨브론이 1995년 화해계약에서 면제자로서 특정되어 있지 않기에 제5조 제1항에 따른 책임면제자가 될 수 없고, 같은 계약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배제되는 제3자에 해당되기에 어떤 식으로든 1995년 화해계약을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에 따르면, 에콰도르 법에서 '*principales*' 라는 스페인어 용어는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기에 웨브론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피신청인은 웨브론이 스스로 텍스팻과의 관계에서 대리관계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텍스팻과 웨브론이 합병 이후 대리인과 본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해도, 환경침해를 야기한 텍스팻의 사업지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지가 1992년 종료되었기에 대리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⁴⁵⁾ 피신청인은 웨브론이 1995년 화해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서 책임면제가 된다고 해도, 같은 계약 제9조 제4항에서 명시적으로 서명당사자가 아닌 누구든지 1995년 화해계약 규정에 따라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웨브론이 이로 인하여 배제된다고 주장하였다.⁴⁶⁾

41) Ibid., para 38.

42) Ibid., para 45.

43) Ibid., para 46.

44) Ibid., para 47.

45) Ibid., para 52.

1995년 화해계약 체결 당시, 에콰도르 헌법 제19조 제2항의 공익권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1995년 화해계약과 1998년 최종면책계약 체결 이후인 1998년 혹은 1999년까지 에콰도르 법에서는 ‘집단적’(collective) 혹은 ‘공익적’(diffuse) 성격의 환경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⁴⁷⁾ 피신청인은 1995년 화해계약 때문에 개인이 1999년 이후 개인적 피해에 대한 환경복원을 위하여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헌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공익’ 혹은 ‘집단’ 청구 또는 1995년 화해계약 제5조 제2항에서 열거한 다른 에콰도르 법 규정에 따른 청구를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⁴⁸⁾

3) 중재판정부의 판단

① 책임면제의 범위

중재판정부는 1995년 화해계약과 1998년 최종면책계약은 피신청인과 페트로에콰도르가 일방 당사자이고 텍스펫이 상대방 당사자가 되어서 1973년 양허계약에 따른 에콰도르의 오리엔테 지역 내 콘소시움 사업지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여지가 있는 모든 환경관련 청구와 함께 부속서 B에서 열거하고 있는 9건의 계약관련 사항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⁴⁹⁾ 중재판정부는 1995 화해계약의 대상은 피신청인과 페트로에콰도르가 텍스펫을 상대로 청구하는 계약관련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피신청인이 비계약적인 권리와 구제수단을 청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⁵⁰⁾

면제되는 청구사항 일체는 피신청인이 할 수 있는 사항에 국한되기에 면제효과는 제3자가 자기 자신의 권리로서 비계약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판정부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비계약적 청구사항이 면제되는 경우는 피신청인이 자기 자신의 권리로서 주장하는 경우이고 제3자가 피신청인에 구속받지 않고서 피신청인의 권리와 별개인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⁵¹⁾

② 쉐브론의 지위

중재판정부는 서명당사자들이 1995년 화해계약 제5조에서 면제대상이 되는 청구사항을 넓게 규정하면서, 이러한 청구의 피고가 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정하였기에 텍스펫의 모회사로서 텍사코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만약, 서명당사자들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텍스펫의 장래 모회사를 책임면제자의 범주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이는 매우 이상한 경우라는 견해를 밝혔다.⁵²⁾ 결국, 판정부는 쉐브론이 1995년

46) Ibid., para 55.

47) Ibid., para 58.

48) Ibid., para 59.

49) Ibid., para 77.

50) Ibid., para 78.

51) Ibid., para 81.

화해계약 제5조 제1항 그리고 이와 동일한 취지의 1998년 최종면책계약 제4조에 따른 책임면제자의 범위에 해당되고, 웨브론이 텍스팻과 같이 1995년 화해계약의 서명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판단하였다.⁵³⁾

하지만 판정부는 제1 본안절차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였다.⁵⁴⁾ 첫째, 피신청인이 화해계약을 위반했는지의 여부, 위반했다면 그러한 위반과 관련해서 웨브론 또는 텍스팻이 활용 가능한 구제로서 금전배상, 확인판단, 특별이행과 같은 구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둘째, LAPs가 주장하는 청구사항이 개인적 권리에 근거하고, 집단적 혹은 공익적 권리에 근거하지 않는지의 여부 그리고 Lago Agrio 소송의 청구사항이 Aguinda 소송의 청구사항과 내용상 유사한지의 여부, 셋째, 화해계약 체결 후 발생한 에콰도르 법의 변경사항으로서 예컨대 1999년 환경관리법의 해석과 적용이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의 여부.

4) 소결

제1 본안절차에서 판정부는 결론적으로 에콰도르 법상 피신청인이 화해계약에 따라서 부여한 책임면제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에콰도르 헌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헌법상 인정되는 공익권을 근거로 해서 책임면제자를 상대로 제소할 수 없고, 제3자라도 제19조 제2항에 따른 헌법상 공익권을 근거로 한 동일한 권리를 원용할 경우 해당 청구가 개인적 손해를 이유로 한 별도의 청구사항이 아니라면 화해계약에 따라서 책임이 면제된 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⁵⁵⁾

(2) 제1본안절차의 2

1) 도입

2013년 11월 12일, 에콰도르 상고법원(Cassation Court)인 국가사법재판소(National Court of Justice of Ecuador)는 라고 아그리오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웨브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4년 2월 10일, 중재판정부는 절차명령 제23호에서 새로운 중재절차 진행 일정을 설정하였다. 이 절차명령에서는 제1 본안절차에서 내려진 일부중재판정(Partial Award)을 둘러싼 쟁점사항과 상고법원 판결 중 일부를 제1 본안절차의 2(Track 1B)로 다루기로 하고, 이와 함께 제2 본안절차와 제3 본안절차에서 다루기로 예비했던 쟁점사항을 명시하였다.⁵⁶⁾

52) Ibid., para 85.

53) Ibid., para 86.

54) Ibid., para 97.

55) Ibid., para 108.

56) 제1B본안 결정(주6), para 22.

제1본안절차의 2에 대한 결정에서 판정부는 특히 일부중재판정 제93항에서 나중 절차에서 다루기로 유보했던 사항 중 LAPs가 에콰도르에서 주장했던 청구사항의 근거가 개인적 권리로서 공익권에 근거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이들 청구사항이 뉴욕 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었던 *Aguinda* 소송에서 청구된 사항들과 내용상 유사한지의 여부를 다루었다.⁵⁷⁾

중재절차 진행 중 신청인들은 미국-에콰도르 BIT를 근거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에콰도르 법제도 내에서 다수의 정의의 거부가 있었고, 이러한 정의의 거부는 국제법상 피신청인의 행위로 귀속되는데, 이러한 정의의 거부는 라고 아그리오 일심법원, 항소법원, 그리고 에콰도르 대법원에까지 확대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본안 관련 정의의 거부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였고 판정부가 중재신청인의 청구사항에 대해서 판단할 중재관할권에 대해서 반대하였다. 판정부는 본안 사항과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당사자들의 분쟁은 제2본안절차에서 다루기로 유보하였기에 제1본안절차의 2에서는 간접적인 면에서라도 그러한 분쟁에 대해서 결정내리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판정부는 에콰도르 법원이 LAPs가 주장하는 청구사항에 대해서 결정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⁵⁸⁾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LAPs의 청구는 공익권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러한 청구는 화해계약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⁵⁹⁾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행정부와 사법부의 작위 및 부작위를 통해서 *Lago Agrio* 소송이 진행되도록 허용하였고, *Lago Agrio* 판결의 집행을 촉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화해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또한 피신청인이 화해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에콰도르 BIT를 위반하였고, 따라서 신청인은 BIT에 따른 중재에서 청구한 확인판단, 중지가처분, 금전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⁶⁰⁾

신청인들은 1995년 화해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라서 LAPs가 에콰도르 민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일부중재판정에서 판정부가 한 추론은 에콰도르 헌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공익청구의 해결과 관련하여 대세적인 기판력(*res judicata erga omnes effect*)을 갖기에 민법 규정을 활용하여 공익권을 주장하는 청구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였다.⁶¹⁾ 신청인은 뉴욕에서 제기된 *Aguinda* 소송에서 청구된 사항은 공익권이 아니라 개인 청구가 결집된 것이기에 *Lago Agrio* 소송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⁶²⁾

57) *Ibid.*, para 3.

58) *Ibid.*, para 5.

59) *Ibid.*, para 55.

60) *Ibid.*, para 56.

61) *Ibid.*, para 74.

62) *Ibid.*, para 75.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어느 공동체를 위하여 공익권에 근거하여 신청인에 대해서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해서 책임이 없도록 한다는 약속을 했고, 이러한 약속사항으로 인해서 피신청인은 효과적인 책임면제가 되도록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행할 적극적 의무와 함께 피신청인 자신이 제3자를 도와서 제3자가 신청인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원하지 않아야 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⁶³⁾

신청인은 1999년 환경관리법(EMA)이 발효하기 이전에는 에콰도르 국가만이 환경 침해를 이유로 공익청구를 제기하거나 화해 타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고, 개인이 다른 개인을 상대로 환경침해를 이유로 공익청구를 할 권리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⁶⁴⁾ 피신청인이 방어수단으로써 판정부는 Lago Agrio 소송의 상고심 결정에 구속된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 신청인은 판정부의 일부중재판정은 UNCITRAL 중재규칙 제32조에 따라서 판정부가 결정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 기판력을 갖기에 상고심 결정을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판정부 자신이 내린 일부중재판정에 구속된다고 판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판정부가 에콰도르 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에콰도르 법원들이 내린 결정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특히 판정부는 상고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1999년 환경관리법은 Lago Agrio 청구사항의 절차적인 측면만 규율할 뿐이라는 점 그리고 Lago Agrio 판결에서의 책임의 근거는 전적으로 에콰도르 민법 제2214조와 제2236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은 1995년 화해계약은 제3자가 민법에 따라서 제기한 불법행위 청구사항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⁶⁵⁾

피신청인은 에콰도르 법에서 집단적 권리와 개인적 권리, 그리고 공익적 권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Lago Agrio 소송에서 주장된 사항은 1999년 환경관리법 제43조의 절차규정에 따라서 제기된 집단적 권리로서 비공익적 권리에 근거한 청구라는 것이다.⁶⁶⁾ 피신청인은 1995년 화해계약 제5조에 따라서 에콰도르 내에서 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신청인이 그러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기에 1995년 화해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⁶⁷⁾ 또한, 피신청인에 따르면 Lago Agrio 소송

63) Ibid., para 79.

64) Ibid., para 90.

65) Ibid., para 103.

66) Ibid., para 104;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권은 헌법상의 구체적 권리라기보다는 추상적 권리로 파악하고 있다. 김상찬,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3호, 2011.12, p. 91; 대법원은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직접 공사금지를 청구할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역시 그와 같이 구체적인 청구권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2006. 6. 2. 자 2004마1148, 2004마1149(병합) 결정.

67) Ibid., para 107.

은 뉴욕에서 제기된 *Aguinda* 소송의 연속이며, *Aguinda* 소송에서 청구된 사항이 1995년 화해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아무런 분쟁이 없기에 *Lago Agrio* 소송에서 청구된 사항이 1995년 화해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⁶⁸⁾

피신청인은 에콰도르 민법 제2236조에 따라서 LAPs가 주장하는 청구사항은 라고 아그리오 법원에서 인용되었는데 이는 미국 법에 따른 공적 또는 사적 권리행사방해(private or public nuisance)로 인한 청구사항에 유사하고, *Lago Agrio* 소송에서 주장된 불법행위 청구사항은 뉴욕법원에 제기된 불법행위청구사항과 대략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은 또한 LAPs가 라고 아그리오 법원에서 주장하였던 구제수단은 *Aguinda* 소송의 원고들이 뉴욕법원에서 주장하였던 구제사항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⁶⁹⁾

피신청인은 에콰도르 헌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오염 없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개인적 권리이지만, 집단소송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고, 1999년 환경관리법 제43조에서는 그러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의 당사자 적격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⁷⁰⁾ 피신청인은 판정부가 일부중재판정에서 피신청인만이 헌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서 오염 없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상 해당 권리는 개인적 권리라는 점에서 반대하였다.⁷¹⁾ 에콰도르 법에 따르면, 환경침해가 원고에 대해서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원고는 당사자 적격을 갖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은 1861년 이후 에콰도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와 동일하다는 것이다.⁷²⁾

피신청인은 상고법원이 공익권(diffuse rights)은 대세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산으로서 주민 중 특정인 또는 개별화된 일정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채 현재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으로 정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⁷³⁾ 피신청인은 *Lago Agrio* 소송에서 청구된 사항은 이러한 공익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⁷⁴⁾

4) 중재 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국내법원이 자국 국내법을 적용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특히 항소법원의 판단은 해당 법을 동일한 상황 혹은 유사한 사정에 적용할 때 그 내용을 판단하는 가장 훌륭한 증거가 되고, 또한 국내법원이 공개적으로 천명한 판단 이유는 통상 분쟁 당사자

68) Ibid., para 127.

69) Ibid., para 128.

70) Ibid., para 131.

71) Ibid., para 135.

72) Ibid., para 134.

73) Ibid., para 133.

74) Ibid., para 133.

들이 주장하는 사항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⁷⁵⁾ 에콰도르 법에 관련된 쟁점 사항에 대해서, 판정부는 라고 아그리오 일심법원, 항소법원 그리고 상고법원의 판단을 지침으로 삼기를 원하였지만, 중재판할권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고, 신청인의 정의의 거부 주장이 경미하지 않은 점에서 판정부가 에콰도르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어느 한 쪽의 입장에서 이들 쟁점 사항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⁷⁶⁾

제1본안절차의 2에서 주된 쟁점 사항은 Lago Agrio 소송에서 청구된 사항이 개인적 손해를 이유로 제기된 개인적 청구사항과 구분되는 공익적 청구사항 뿐인지의 여부인데⁷⁷⁾, 판정부는 에콰도르 법상 개인적 청구사항은 해당 개인에게 속하고 구제도 그 개인에게 전속하고, 공익적 청구는 불특정 다수의 공동체에 속하고 그 구제는 불가분적이라고 판단하였다.⁷⁸⁾

중재판정부는 LAPs의 특정개인들은 누구도 대표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라고 아그리오 법원에서 자신들만 대표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역으로, 신청인들도 만약 특정 개인 30,000명이 개인적 청구사항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청구사항이 1995년 화해계약으로 배제되는 공익적 청구사항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고 판단하였다.⁷⁹⁾ 중재판정부의 견해로는, 분쟁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답은 LAPs의 형식적인 제소적격에 있지 않고 청구원인과 이들 원고들이 원용하는 권리의 실체적 성격에 있다는 것이다.⁸⁰⁾ 분쟁 당사자들이 공유하는 사항은 Aguinda 소송의 원고들은 개인적 청구로서 공적 권리행사 방해를 이유로 인한 청구를 제기했고, 미국법상 인정되는 공익적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뉴욕 법에 따르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개인은 공익적 권리 행사 방해에 대해서 아무런 청구도 할 수 없고, 그러한 청구는 공공기관이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개인적 청구를 주장하는 개별 원고는 오염으로 인한 권리행사 방해로 특별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⁸¹⁾

중재판정부는 Lago Agrio 소송에서 주장된 일부 청구사항은 뉴욕 법에 따른 개인적 청구를 에콰도르 법과 절차에 따른 개인적 청구로 변형시켰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 Lago Agrio 소송의 청구사항은 Aguinda 소송의 원고들이 뉴욕 법원에서 주장하였던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이러한 청구사항은 에콰도르 법에 따르면 개인적 청구라는 것이다.⁸²⁾

75) Ibid., para 140.

76) Ibid., para 143.

77) Ibid., para 152.

78) Ibid., para 156.

79) Ibid., para 165.

80) Ibid., para 166.

81) Ibid., para 178; Leo v. General Electric Co., 145 A.D.2d 291, 294, 538 N.Y.S.2d 844, 847 (2nd Dept. 1989)

82) 제1B본안 결정(주6), para 181.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Lago Agrio 소송의 청구사항이 Lago Agrio 소송의 청구사항 제기 후 에콰도르 법원에서 이들 청구사항을 다른 방식에 따라서 공익적 청구라고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청구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았다.⁸³⁾ 판정부는 Lago Agrio 소송에서 청구된 사항에는 개인적 청구도 포함되어 있기에 신청인이 주장하고 피신청인이 반대하듯이 오직 공익적 청구사항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한도에서, 신청인들이 1995년 화해계약을 원용하면서 이 계약에 따라서 Lago Agrio 소송의 청구사항은 에콰도르 법률상 처음부터 배제된다는 주장은 배척되었다. 하지만, 판정부는 제1본안절차의 2에서 이러한 개인적 권리가 라고 아그리오 일심법원, 항소법원, 상고법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취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제2본안절차에서 다루기로 하였다.⁸⁴⁾

V. 결론

2011년 2월, 에콰도르 법원이 쉘브론에 대해서 미화 182억여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쉘브론은 미국 뉴욕법원에서 공갈매수 및 부패조직처벌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Act : RICO 법)에 따라서 Lago Agrio 소송의 원고와 이들을 지원하는 미국 변호사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LAPs와 이들 변호사들이 Lago Agrio 소송과 연계해서 행한 사기, 강탈, 등 그 밖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⁸⁵⁾

2014년 3월 4일, 뉴욕 관할 연방지방법원의 카플란(Lewis Kaplan)판사는 RICO법이 LAPs를 지원한 미국인 변호사 Steven Donziger를 위시하여 미국인 변호사들에게 적용되고 이들이 뇌물공여, 협박, 강탈, 증인의 위증교사 및 사기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기수 및 미수의 책임이 있고 라고 아그리오 판결은 부정한 수단으로써 내려졌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카플란 판사는 RICO 사건의 피고들이 부정한 방식에 의한 판결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⁸⁶⁾ 한편, 2011년 에콰도르는 미국-에콰도르 BIT 제2조 제7항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 같은 BIT 제7조를 근거로 미국을 상대로 국가 대 국가 중재절차를 개시하였다.⁸⁷⁾

83) Ibid., para 182.

84) Ibid., para 183.

85) Chevron/Donziger 사건(주11), p. 339.

86) Ibid., pp. 475-478.

87) Request for Arbitration(28 Jun 2011), Republic of Ecuador v. United States of America (PCA Case No. 2012-5), para. 8, <<http://www.italaw.com/sites/default/files/case-documents/ita1056.pdf>>

쉐브론과 텍스페이 에콰도르를 상대로 개시한 투자조약중재의 주된 쟁점 사항 중 하나는 에콰도르 헌법 제19조 제2항에 근거한 청구사항의 성격이 공익적 청구(diffuse claim)인지의 여부였다. 이러한 사항에 관한 질문사항은 Lago Agrio 소송에서 원고들이 2003년 5월 17일 법원에 제출한 청구사항을 근거로 한다. 제1본안절차의 2 단계에서, 당사자들은 Lago Agrio 소송에서 원고들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대표 자격으로서 공익적 청구만 주장하였고 개인적 자격 혹은 개인적 권리를 위하여 청구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의 불가분적인 권리만 원용하였고 개인적 손해를 위한 청구를 하거나 개인적 구제를 추구하지 않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다투었다.

중재판정부는 2012년 2월 자신의 일부중재판정에서 1995년 화해계약 제5조로 인하여 에콰도르 법률상 헌법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쉐브론과 텍스페이를 상대로 피신청인이 청구를 제기할 수 없고, 개인적 손해를 이유로 주장하지 않는 한 개인도 그러한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동의하지 않았고, 에콰도르 대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피신청인은 헌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오염 없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개인적인 권리이지만 집단소송방식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에콰도르 법상,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1861년부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절차적으로 1999년 환경관리법이 제정된 후 환경적 성격의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개인이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1본안절차의 2에 관한 결정에서, 판정부는 Lago Agrio 소송의 청구사항은 공익적 청구와 개인적 청구 양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Lago Agrio 소송의 원고들이 1995년 화해계약과 상관없이 쉐브론을 상대로 합법적으로 제소할 수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형식상 ‘결정’이고, 이는 중재판정으로 간주될 수 없기에 이러한 결정에서 다루어진 쟁점 사항에 대해서 판정부의 권한이 소진되지 않았고, 판정부는 자신이 나중 중재절차에서 명령, 결정, 중재판정 등의 형식으로 이러한 결정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할 때 중재관할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⁸⁸⁾ 신청인이 에콰도르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주장하는 다수의 정의의 거부에 관한 주장과 피신청인의 관할권 항변사항 그리고 판정에 대한 이의사항 등은 제2본안절차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들 사건은 에콰도르 국내법과 국제조약인 BIT 규정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8) 제1B본안 결정(주6), para 6.

참고문헌

논문

- 김경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의 대상이 된 투자자 보호원칙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1호, 2009.3.
- 김상찬,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3호, 2011.12.
- 김용일/홍성규, “국제투자협정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2권 제3호, 2012.12.
- 안건형/김성룡/조인호, “국제투자중재에서 제3자 자금조달 제도의 주요 법적 쟁점”, 중재연구 제23권 제2호, 2013.6.
- Erichson, Howard M., “The Chevron-Ecuador Dispute, Forum Non Conveniens, and the Problem of Ex Ante Inadequacy”, 1 Stanford Journal of Complex Litigation, 2013.
- Giorgetti, Chiara, “Mass Tort Claim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Proceedings : What Are the Lessons from the Ecuador-Chevron Dispute”, 34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3.
- Kimerling, Judith, “Indigenous Peoples and the Oil Frontier in Amazonia : The Case of Ecuador, ChevronTexaco, and Aguinda v. Texaco”, 38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Politics, 2006.

법원 판결

- 대법원 2006. 6. 2. 자 2004마1148, 2004마1149(병합) 결정
- Leo v. General Electric Co., 145 A.D.2d 291, 294, 538 N.Y.S.2d 844, 847 (2nd Dept. 1989)
- Aguinda v. Texaco, Inc., No. 93 Civ. 7527 (JSR) (S.D.N.Y. Nov. 3, 1993)
- Aguinda v. Texaco, Inc., 945 F. Supp. 625, 628 (S.D.N.Y. 1996)
- Aguinda v. Texaco, Inc., 303 F.3d 470, 473 (2d Cir. 2002).
- Republic of Ecuador v. ChevronTexaco Corp., 376 F. Supp. 2d 334, 341 (S.D.N.Y. 2005).
- Sinochem Int’l Co. v. Malay. Int’l Shipping Corp., 549 U.S. 422, 425 (2007)
- Chevron Corp. v. Donziger, Case 1:11-cv-00691-LAK-JCF (March 15, 2013)
- Chevron Corp. v. Republic of Ecuador, Civil Action No. 12-cv-01247-JEB, 2013 WL 2449172 (D.D.C. 2013)

국제 재판 판결 및 국제 중재 판정

Serbian and Brazilian Loans Case (1929) PCIJ, Ser A Nos 20-1.

Nottebohm Case(second phase), [1955] ICJ Reports 4.

Interim Award, Chevron/TexPet v. Ecuador, UNCITRAL, PCA Case No. 34877(1 Dec 2008)

Partial Award on the Merits, Chevron/TexPet v. Ecuador, UNCITRAL, PCA Case No. 34877(30 March 2010)

Final Award, Chevron/TexPet v. Ecuador, UNCITRAL, PCA Case No. 34877 (31 August 2011)

Third Interim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on, Chevron/TexPet v. Ecuador, UNCITRAL, PCA Case No. 2009-23 (Feb. 27, 2012),

First Partial Award on Track 1, Chevron/TexPet v. Ecuador, UNCITRAL, PCA Case No. 2009-23 (17 September 2013)

ABSTRACT

Case Study o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and Environmental Litigations with Specific Reference to Chevron/Ecuador Litigation

Pyoung-Keun Kang

The Chevron saga including *Chevron/TexPet v. Ecuador, PCA Case No. 34877* (hereinafter referred to as “Chevron I”) and *Chevron/TexPet v. Ecuador, PCA Case No. 2009-23* (hereinafter referred to as “Chevron II”) started out of domestic litigations between TexPet and Ecuador in the early 1990s. In Chevron I, the Tribunal decided that Article 2(7) of the U.S.-Ecuador BIT on effective means of provision was breached because of undue delays in the seven legal proceedings TexPet had brought against Ecuador in respect to contractual obligations. In Chevron II, it was contended that through the actions and inactions of the judiciary and the executive, Ecuador breached her several obligations under the BIT. Ecuador objected to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because TexPet’s investment was terminated in 1992, and because Chevron is not a party to the 1995 Settlement Agreement and 1998 Final Release. In its Interim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the Tribunal applied a prima facie standard to the facts alleged by the Claimants but denied by the Respondent, and decided that questions in respect of the Respondent’s jurisdictional objections should be joined to the merits under Article 21(4)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In the merits phase of Chevron II, the Tribunal divided the merits of the Parties’ dispute into two parts, entitled “Track 1” and “Track 2”. In its Partial Award on Track 1, the Tribunal decided that Chevron is a “Releasee” under the 1995 Settlement Agreement. In a decision on “Track 1B”, the Tribunal decided that the Lago Agrio complaint cannot be read as pleading “exclusively” or “only” diffuse claims, and that, to this extent, the Claimants’ reliance on the 1995 Settlement Agreement as a complete bar to the Lago Agrio complaint must fail, as a matter of Ecuadorian law. The Tribunal maintained the position that the Parties’ disputes on both merit and jurisdiction should be reserved for Track 2. It remains to be seen how the Tribunal addresses the Claimants’ allegations of multiple denials of justice under international law against the judgments of the Respondent’s Courts, together with the Respondent’s jurisdictional objections in Track 2 of the arbitration.

Key Words : Investor-State Arbitration, Denial of Justice, Jurisdictional Objections, Environmental Litigation, Diffuse Claims